



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5
제정일자	2007.08.01
개정일자	2011.05.13
개정번호	Ver.2
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칙시행세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이 1/2이상 포함되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하며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 내부위원은 교무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전임교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은 위탁업체 임직원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⑥ 본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제3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.

1. 위탁교육의뢰 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
2.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
3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4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6. 학교와 위탁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보고 및 시행) 회의 내용 및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결재 후 시행한다.

제7조(규정의 제정 및 개정) ①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 결재 후 시행한다.

②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은 제4조 제②항에 따른다.

부 칙

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**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진행한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